

변경대비표

1. 대상펀드 : 하나UBS차이나A블루칩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(PH)[주식]
2. 변경내용 : 세제위험 내용 및 중국에서의 과세 내용 변경
3. 변경적용일 : 2014년 12월 24일
4. 대비표

투자설명서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p>9.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 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QFII가 운용(위탁운용 포함)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본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(하나UBS 차이나A 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은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이 경우,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</p> <p>11. <신설></p>	<p>9.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 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QFII가 운용(위탁운용 포함) 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중국 본토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(하나UBS 차이나A 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은 <u>2014년 11월 16일까지</u>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. <u>2014년 11월 16일까지</u>의 중국과세당국이 QFII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</p> <p>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

<p>제2부 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최신일 기준 업데이트</p>	<p>최신일 기준 업데이트</p>
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</p>	<p>세제위험</p> <p><추가></p> <p><생략></p> <p>모투자신탁이 투자하게될 중국 A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등은 현재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.</p> <p>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 가 운용(위탁운용 포함)하는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 A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p> <p>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, 모투자신탁은 중국본토 주식(중국 A 주 및 B 주)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<u>적립하고자 합니다.</u>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</p>	<p>세제위험</p> <p><u>중국 재무성(Ministry of Finance)이 2014년 11월 14일에 「과세 2014-79호 고시」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투자신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 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.</u></p> <p><현행과 같음></p> <p><u>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중국 A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등은 현재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</u></p> <p>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중국 과세당국이 QFII 가 운용(위탁운용 포함)하는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 A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p> <p>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, 모투자신탁은 <u>2014년 11월 16일까지 중국본토 주식(중국 A 주 및 B 주)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.</u> 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</p>

	<p>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대한 중국 A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다만,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,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.</p> <p><u>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하되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</u>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투자신탁재산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다만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두자산탁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,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이와 반대로,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,</u>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(과거,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)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,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(즉,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)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두자산탁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</p>	<p>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대한 중국 A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 다만,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,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.</p> <p><u>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</u>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투자신탁재산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다만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두자산탁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,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이와 반대로,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,</u>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(과거,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)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,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(즉,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)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두자산탁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</p>
--	---	--

	<p>이 투자자의 잔존이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특히, 잔존이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두자산탁에서 유보 및 적절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,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.</p>	<p>이 투자자의 잔존이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특히, 잔존이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두자산탁에서 유보 및 적절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당국에서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,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.</p>
<p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중국 소득세 과세 가능성</p>	<p>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두자산탁은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</p> <p>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대한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준비금 비율을 필요에 의해 조절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,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.</p> <p><u>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하되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</u></p>	<p>이러한 소급과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두자산탁은 <u>2014년 11월 16일까지</u> 중국 본토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였습니다.</p> <p>이렇게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향후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대한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중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납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준비금 비율을 필요에 의해 조절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중국과세당국이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며,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.</p> <p><u>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2014년 11월 16일까지의 중국 A Share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,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은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 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</u> 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</p>

	<p>집합투자업자는 과세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다만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,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<p>이와 반대로,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<u>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</u>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(과거,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)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,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(즉,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)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두자산탁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특히,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두자산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 당국에서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,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.</p> <p><추가></p>	<p>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투자신탁재산에의 환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. 다만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이 모두자산탁 재산에 환입되기 이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준비금 환입에 따른 차액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며, 환매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</p> <p>이와 반대로, 만약 중국 과세당국이 <u>2014년 11월 16일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</u>, 기존에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을 세금납부(과거, 현재 및 미래 발생 분 포함)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, 과세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분(즉, 실제 부과된 또는 부과될 세금 금액과 과세준비금의 차이)만큼의 금액을 해당 시점의 모두자산탁 재산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신탁의 잔존수익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특히, 잔존수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적인 과세대금은 모두자산탁에서 유보 및 적립한 과세준비금에 상관없이 중국 과세 당국에서 QFII 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세율,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기준시점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, 최종적인 과세금액은 기 유보 및 적립된 과세준비금 보다 클 수 있습니다.</p> <p>중국 재무성(Ministry of Finance)이 <u>2014년 11월 14일에 「과세 2014-79호 고시」</u>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의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일시적 면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모두자산탁은 동 중국 재무성 고시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준비금 유보 및</p>
--	---	--

		<p>적립을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매매차익 및 평가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 방침 관련 추가 고시가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.</p>
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라. 운용자산규모 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</p>	<p>라. 운용자산규모 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</p>